

나노융합기술원 운영세칙 신규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나노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독립채산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나노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기술원의 정식 명칭은 “나노융합기술원 (National Institute for Nanomaterials Technology)”이며, 약칭은 “나노기술원(NINT)”이라 한다.	좌동	
제3조(설립목적) 기술원의 설립목적은 나노소재·재료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결과를 사업화함으로써, 나노기술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제3조(설립목적) 기술원의 설립목적은 나노소재·재료 및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장비 및 설비 이용지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나노기술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제4조(조직) 기술원에는 별표1의 조직을 두며, 기술원의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조직) 기술원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1의 하부조직을 둔다.	
	제5조(직제) 기술원은 별표1의 하부조직에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소관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제5조(원장) ① 기술원에는 기술원을 대표하는 원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원장) ① 기술원에는 기술원을 대표하는 원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이동 및 내용 변경, 제5조 3항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② 원장은 기술원을 총괄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8.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원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2. 기술원 운영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인사 및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활용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p>③ 기술원 운영관련 정부사업과제는 원장이 총괄책임자(연구책임자)를 겸임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8.23)</p>	<p>② 원장은 기술원을 총괄하며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구성 및 운영 2.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3. 운영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인사 및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p>제6조(본부장) 본부장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본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23)</p>	<p>제7조(부원장)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p>	제6조 이동
	<p>제8조(위임전결 기준) 기술원 각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를 따르고 대학의 위임전결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대학의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p>	신설
<p>제7조(구성원) ① 기술원에는 기술원 참여교수, 연구원, 행정원, 기능원을 두며, 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p>	삭제	기존 제7조 내용은 제10조로 이동 및 내용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② 기술원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원장은 필요시 기술원의 운영자문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석학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예산 및 회계) ① 기술원의 예산은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컨소시엄의 출연금, 장비 및 시설이용료 수입, 수탁연구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편성된다.</p> <p>② 예산은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출연금 및 기타의 재정으로 구분 계리한다. (개정: 2013.8.23)</p>	<p>제9조(예산 및 회계) ① 기술원의 예산은 기술원의 자체적인 사업수입, 외부 수탁 사업 및 연구과제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된다.</p>	<p>제8조 이동 및 내용 변경</p>
<p>제9조(운영위원회) 기술원은 기술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8.23)</p>	<p>제10조(인력) ① 원장은 기술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총장의 승인 하에 아래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2.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원 3.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따른 연구계약직 <p>② 원장은 기술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의 자문과 공동 활동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7조 이동 및 내용 변경</p>
<p>제10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기술원은 장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p>	<p>삭제</p>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두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8.23)</p>		
<p>제11조(이용자협의회) 기술원은 기술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용자협의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1조(운영위원회) ① 기술원은 기술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총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 교원 2인 이상의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p> <p>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원 운영세칙(지침 제외)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술원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술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여하는 사항 <p>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원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p>	<p>제11조 이용자협의회 삭제 및 운영위원회로 내용 변경</p>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제12조(실무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① 기술원은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기술원의 제반 실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기술원은 기술원 구성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2조(실무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① 기술원은 기술원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원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에 관한 사항 2. 기술원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3.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부원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경영기획팀 실무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4. 위원장 유고시 경영지원부장이 대행한다. 5. 회의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관한다. 6. 심의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p>② 삭제</p>	<p>인사위원회 삭제 및 실무운영위원회 역할 명확화</p>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3조(지침 등)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 등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침 등)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포항공과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3)	제14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 (센터장에 대한 경과조치)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이 종료되는 2009년 7월 31일까지는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사업총괄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한다.</p> <p>3. (시행일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세칙은 2013년 8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 (센터장에 대한 경과조치)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이 종료되는 2009년 7월 31일까지는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사업총괄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한다.</p> <p>3. (시행일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세칙은 2013년 8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이 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세칙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p>	
<p>(별표 1) 나노융합기술원 조직도</p>	<p>(별표 1) 나노융합기술원 조직도</p>	<p>조직 변경안 반영</p>
	<p>(별표 2) 위임전결 기준표</p>	<p>추가</p>